

의안번호	2212775
의 퇴 인	김소회의원
회 답 일	2025.11.10.
추계번호	25D4867

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(급여액 산정의 기초)	장해급여, 장해유족연금 등의 급여의 산정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(공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최초 진단일을 말한다)이 속하는 달을 기초로 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0조(급여액 산정의 기초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장해급여 등의 급여 산정 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최초 진단일로 규정(안 제10조)

- 개정안에 따라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장해급여 등의 급여 산정 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최초 진단일로 규정하는 경우, 급여 산정 시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 등으로 재정소요에 변화가 예상됨
 - 현행법은 급여액 산정 기초인 기준소득월액 및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급여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, 퇴직으로 급여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 급여 사유가 발생하는 장해급여·순직유족급여는 퇴직한 달로 규정
 - 개정안에 따라 질병 최초 진단 시점에서 장해급여와 순직유족급여의 기준소득월액 및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면, 기존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점인 퇴직 시보다 반드시 선행(先行)하는 최초 진단 시점이 급여액 산정 기준일이 되므로, 상대적으로 적은 기준소득월액을 급여액 산정 기초로 적용하므로 재정소요 감소 예상

- 한편, 재해보상급여 중 장해급여와 순직유족급여는 공무상 질병의 발병뿐 아니라 퇴직, 사망과 같은 추가적인 급여 지급 요건을 가지고 있는데, 개정안에 따라 질병의 최초 진단시점으로 급여사유 발생일을 정의할 경우, 장해연금과 순직유족연금 승인 시 그 급여를 질병의 최초 진단 시점부터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추가 재정소요 발생
- 다만, 개정안에 따라 장해급여 등의 급여 산정시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의 감소폭, 장해연금과 순직유족연금의 소급 지급기간 및 평균 연금액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- 참고로, 장해급여, 순직유족급여 등 재해보상급여에 대한 지급여부는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심의·의결하며, 총 지급액은 결산기준 2019년 1,679억원에서 2023년 2,088억원으로 연평균 5.6% 증가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